

1. 개정이유

신분증을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속아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영업자를 구제하고자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면제 요건의 확대(안 제11조 제4항)

* (기존)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면제 → (변경) 기존 면제요건에,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나. 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3 위반사항 사.)

* (기존) 1차: 2개월, 2차: 3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음의 각 호를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제11조제5항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의 제목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5항 관련)” 중 관련 조항을 제11조제5항에서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영업정지기준의 1차란 “2개월”을 “7일”로 하고 2차란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 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①~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 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 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①~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u> <u>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u> <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u> <u>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u> <u>면제한다.</u> 1. <u>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u> <u>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u> <u>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u> <u>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u> <u>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u> <u>정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u> <u>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u> <u>방법으로 확인된 경우</u> 2. <u>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u> <u>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u> <u>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u> <u>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u> <u>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u> 3. <u>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u> <u>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u> <u>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u>

<신 설>

⑤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제11조제5항 관련)

2. 개별기준 제2호 사목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	2차

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제11조제6항 관련)

2. 개별기준 제2호 사목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	2차

사 청소 년 에게 담배를 판 매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21월	31월
사 청소 년 에게 담배를 판 매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7일	17개월